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2003. 3. 17
교통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제안일자 : 2003년 2월 28일
- 의안번호 : 제153호
- 회부일자 : 2003년 3월 3일

2. 제안이유

- 교통방송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개국(1990년 6월)이후 방송 관련 법령과 내부방침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통합·정비하여 그 운영에 있어 합법성과 투명성·객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방송은 시장이 결정한 방송기본편성표에 의하도록 하고 방송 편성책임자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방송의 제작 또는 진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기준은 다른 방송사의 수준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다. 시장은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리포터(100인 이내), 방송통신원(200인 이내), 방송모니터(15인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은 방송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찬내역은 방송내용과 방송시간, 협찬고지회수를 참작하여 협찬업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협찬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협찬자 모집수수료는 모집금액의 13%(부가가치세 포함)로 함.(안 제11조)

4. 검토의견 (전문위원 : 임 령)

-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사안별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2003. 2. 28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3호로 2003. 3. 3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통방송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개국(1990년 6월)이후 방송관련 법령과 내부방침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통합·정비하여 그 운영에 있어 합법성과 투명성·객관성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 자체감사(2001.11 ~ 12)와 우리위원회의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
- 다음은 주요 조문별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제6조(방송제작비 등 지급)에 대한 의견입니다.
 - 방송제작비는 원고료, 사회료, 출연료, 리포터, 제보비, 음악료, 진행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통례로 방송제작에 참여한 자에 대한 대가성 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 교통방송본부에서는 방송의 질과 청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시 방송제작(PD, 아나운서, 기자), 방송기술, 교통정보, 광고및자료관리의 4분야 전문가로 구분

하여 계약 채용하고 있음.

- 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4항 등에 의거 보수를 받고 있으나, 방송제작에 관련된 공무원에 한하여 방송제작시 민영방송사의 지급관례를 적용하여 진행비, 원고료 등을 지급받는 것은 고려할 사항임 둘째, 제7조(리포터 및 방송통신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 리포터·방송통신원·모니터 인원의 숫자는 방송진행과 방송제작요인에 따라 인원 증감이 변동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무관리이므로 규칙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셋째, 제11조(협찬방송)에 대한 의견입니다.

- 협찬방송의 협찬자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에 위탁할 경우, 수수료를 13%로 규정하여 명시하는 것보다 상한선을 13%로 하고, 입찰 등을 통한 수수료 및 광고대행사의 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 협찬자 모집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경우 현재 담당하고 있는 광고팀과 창구가 2원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청계천 복원공사 대비 교통처리종합대책 추진현황 보고

청계천 복원으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립된 교통처리종합대책을 구체화하고 추진주체, 추진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I. 추진상황

추진경위

- 2002.9 도심교통개선반 설치
- 2002.11~2003.1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교통상황 시뮬레이션 및 문제점 파악
- 2003.1~2003.2 교통처리종합대책 수립
- 2003.2.8 교통처리종합대책 Workshop
- 2003.2.12~ 교통처리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사업현황

구 분	현안사업	장기 과제
도심 및 진입도로의 소통능력 향상	16	1
도심유입 교통량의 분산·우회처리	12	6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을 통한 승용차 통행수요 전환	4	
승용차 이용수요관리 및 시민참여	6	1
청계상가 교통대책	1	
교통대책 홍보	1	

※ 장기 과제 : 을곡로~대광고교간 도로개설, 정릉천 복개구간 치수사업, 내부순환로(홍은~정릉동) 구조개선,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 을곡로 도로구조 개선,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주차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 청계천로 시점부 교통처리